

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
1999. 3. 18.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9년 1월 29일

· 회부일자 : 1998년 1월 29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158회 임시회

·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1999. 3. 12) 상정,질의답변,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박경국)

가. 제안 이유

○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및 「낙농진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

- 축산물에 대한 검사·시험 등의 의뢰와 수수료 징수 등 축산위생연구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임

나. 주요 골자

-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 (안 제1조)
- 축산물에 대한 검사·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검사·시험의뢰서와 검체소요량을 제출하여야 하며, 축산위생 연구소장은 검사·시험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(안 제3조, 제4조)
- 검사·시험 등의 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「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기준」을 적용하며,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조정하고 원유공영검사 수수료의 징수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함(안 제5조, 부칙 제2조2항)
- 충청북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수행상 의뢰한 경우와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함 (안 제6조)
- 검사결과의 광고·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교부한 검사·시험성적서를 반환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, 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정 노 환)

-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낙농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 검사·시험 등의 수수료 징수와 축산위생연구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인 바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삭제하고 당 조례에 규정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, 원유검사 항목을 추가하였으며
- 실험용 검체소요량과 축산물검사 및 수출육류잔류물질 검사 등을 제정하는 바 용어의 명칭과 검사·시험 등을 위한 현지출장 여비징수에 있어서는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으로서 시대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사안으로서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: “ 생 략 ”

6. 수정안요지 :

가. 수정이유

- 검사·시험 등을 위한 현지출장여비 징수는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임.
- 용어와 명칭을 법령에 사용하는 어휘로 하여야 함.

나. 수정 주요 골자

- 검사·시험 등을 위한 현지출장여비 징수를 규정한 (안) 제5조중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함.
- “관공서”를 “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”로 함.
- 구두점 및 중간점 사용을 바로 함.

7. 심사결과 : “수정 및 가결”

8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별첨

- ◎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(안) - 충청북도지사 제출
- ◎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
- ◎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- ◎ 신·구문대조표